제156회 창원시의회 (임시회)
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[2026. 10.28.(수)]

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(건설해양농림위원회)

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10. 28.
건설해양농림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10. 16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10. 20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(2026.10.28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: 재난대응담당관 강홍주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‘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’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○ 재난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‘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’를 설치·운영하도록 정함(안 제7조의2제1항)

○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 차장으로 하고, 조직 구성과 임무 등 세부 사항을 정함(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, 별표 7)

○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, 지원센터를 「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

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2제4항)

○ 재난피해 심각성 등에 따라 ‘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’ 설치·운영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,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(안 제7조의2제5항)

다. 참고사항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: 안건파일 참조

○ 관계 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, 「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, 「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○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○ 합　　의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6. 9. 15. ~ 10. 6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정은정)

□ 개정목적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(2026. 7. 22. 시행)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‘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’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□ 주요 내용

○ 안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을 통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‘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’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대책본부 차장의 센터장 겸직, 세부 조직·임무(별표 7)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통합 대응 체계를 규정함

○ 안 제7조의2제5항을 통해 재난피해 심각성 등에 따라 ‘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’ 설치·운영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,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함

□ 종합의견

○ **본 개정 조례안**은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개정 취지에 부응하여, 기존의 시설 및 물적 복구 중심 재난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·법률·의료·장례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종합 지원체계(재난피해자지원센터)를 조례에 신설·명문화하는 것으로서 법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

○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(소관 부시장)이 겸직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수습 및 피해 지원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○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장의 긴박함을 고려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한 조치로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○ 경상남도 또한 「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개정(2026. 10. 1. 시행)을 통해 광역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정비한 바 있음

「**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**」('26.9.7. 제436회 제1차 건설소방위 원안가결)

제29조의2(재난피해자지원센터)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,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·군 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**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**

②,③ 생략

④ 지원센터는 시·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시·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
○ 따라서 창원시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상남도에 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지원을 주고받는 규정(안 제7조의2제5항)은 광역-기초 지자체 간 재난 대응 공조 체계를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 방향임

○ 다만,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상시 운영되는 전담 조직이 아니며,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한시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임시 기구라는 한계가 있음

○ 이를 보완하고 실제 재난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인력 확보, 관내 의료·법률·심리상담 전문기관과의 사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실무적 차원의 사전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○ 종합적으로 **본 개정 조례안**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준수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**타당하다고 판단됨**

4. 질의 · 답변요지: 기재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: 없음

6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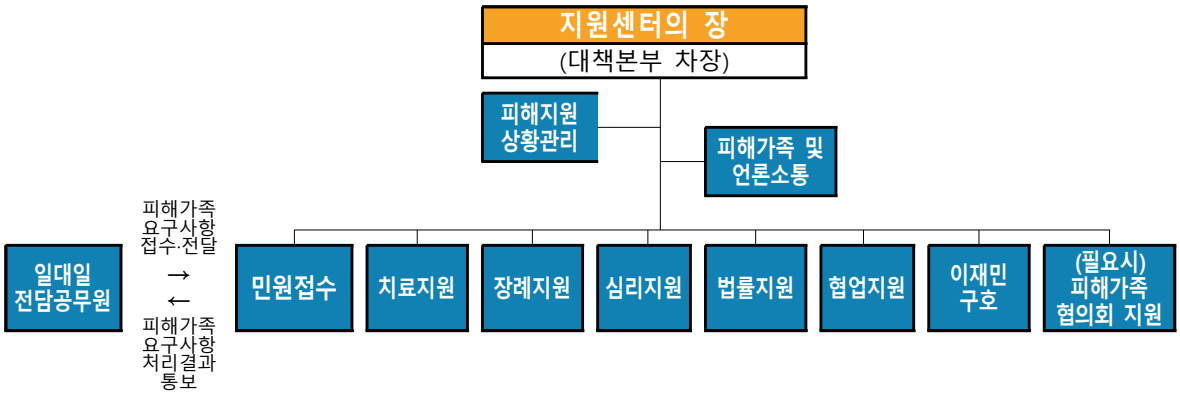
7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

참고 관련 자료

■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[별표 7] <신설 2026. . .>

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임무(제7조의2제3항 관련)



구 분	임무
피해지원 상황관리	○ 지원센터 업무 총괄·조정 ○ 재난피해자 관련 민원 관리 총괄 ○ 외국인 재난피해자 통·번역 지원 등 총괄
피해가족 및 언론소통	○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○ 피해가족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
민원접수	○ 현장민원실 운영 ○ 재난피해자의 민원 취합·관계기관 공유
치료지원	○ 부상자 입·퇴원 등 현황 관리 ○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○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
장례지원	○ 시신 및 유류품 인도,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○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
심리지원	○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·연계 ○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
법률지원	○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
협업지원	○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○ 피해신고서 접수·처리 지원 ○ 구호금,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
이재민 구호	○ 이재민 발생 상황 파악·관리 ○ 급식 및 개별 구호물품 제공 ○ 임시주거시설 제공
피해가족 협의회 지원	○ 재난피해자를 위한 자조모임·협의회 등 지원 ○ 배·보상,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

※ 비고

1.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조직 구성을 탄력적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2.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■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[별표 1] <개정 2025. 5. 15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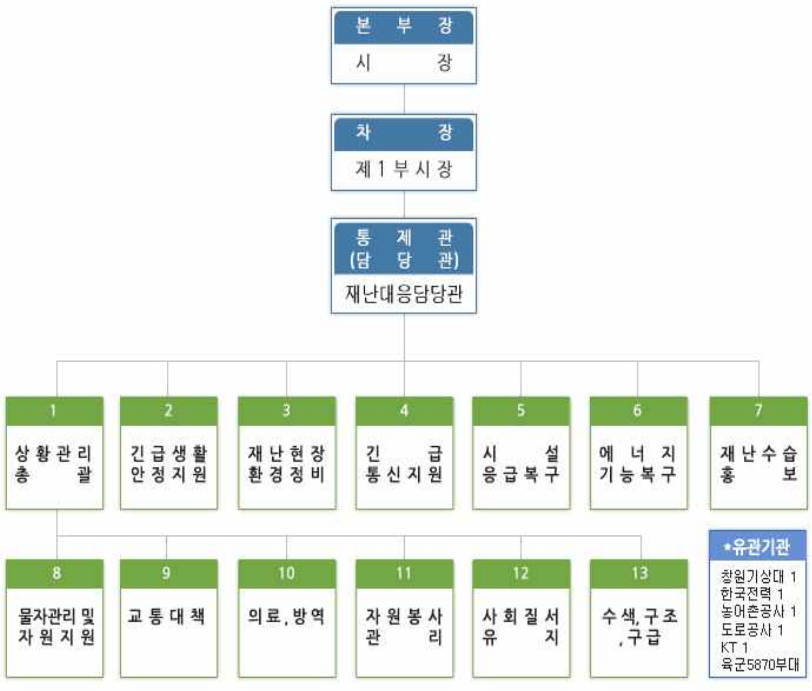
재난수습주무부서(제4조제2항 관련)

재난관리 주관기관	재난 및 사고의 유형	주관부서
교육부	○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	평생교육과
과학기술정보통신부	○ 우주전파 재난 ○ 정보통신 사고 ○ 위성항법장치(GPS) 전파혼신	정보통신담당관
법무부	○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	자치행정과
국방부	○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	안전총괄담당관
행정안전부	○ 정부중요시설(시청사) 사고 ○ 공동구(共同溝) 재난(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) ○ 화재·위험물 사고 ○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○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○ 풍수해(조수는 제외한다)·지진·화산·낙뢰·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○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	회 계 과 해당 실과 대응예방과 시설물담당부서 대응예방과 재난대응담당관 항만물류정책과
문화체육관광부	○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	해당 실과 (체육진흥과, 문화예술과, 관광과 등)
농림축산식품부	○ 가축 질병 ○ 저수지 사고	농업정책과 〃
산업통상부	○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○ 원유 수급 사고	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
보건복지부	○ 감염병 재난 ○ 보건의료 사고	보건정책과 보건행정과

재난관리 주관기관	재난 및 사고의 유형	주관부서
기후에너지 환경부	○ 원자력안전 사고(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) ○ 전력 사고 ○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○ 식용수(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) 사고 ○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○ 조류(藻類) 대발생(녹조에 한정한다) ○ 황사	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수도시설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
고용노동부	○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	안전총괄담당관
국토교통부	○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○ 고속철도 사고 ○ 도로터널 사고 ○ 식용수(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) 사고 ○ 육상화물운송 사고 ○ 항공기 사고 ○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	해당 실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수도시설과 버스운영과 교통정책과 건축경관과
해양수산부	○ 조류 대발생(적조에 한정한다) ○ 조수(潮水) ○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○ 해양 선박 사고	수 산 과 수 산 과 수 산 과 항만물류정책과
원자력안전위원회	○ 원자력안전 사고 ○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	재난대응담당관 〃
국가유산청	○ 국가유산 시설 사고	문화예술과
산림청	○ 산불 ○ 산사태	산림휴양과 〃
비고: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.		

■ 창원시 재단안전대책본부 현황

자료) 창원시 홈페이지

설치 및 운영규정	•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름
구성	• 본　부　장 : 시장 • 차　　장 : 제1부시장 • 통　제　관(담당관) : 재난대응담당관 • 실　무　반 : 13개반 • 유관기관 : 12개소
기능	• 재난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 •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•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•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의 발령 • 재난대책에 관한 관련 실·과·소 업무 총괄조정 •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작성 •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운영기간	자연재난 : 상시 인적재난 : 재난 발생시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
조직도	

■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 1] <개정 2024. 12. 20.>

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(제7조 관련)

□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

